

보도시점 2024. 5. 22.(수) 조간  
2024. 5. 21.(화) 12:00

배포 2024. 5. 21.(화)

## 이·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·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

- 혈액 묻은 타올·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-
-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→4개소까지 늘려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5월 22일(수) 「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」과 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」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「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」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그동안 이·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### <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(덧옷)의 소독 방법>

①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 
(유효염소농도 1000ppm)에  
10분간 담가 놓는다.

⇒

② 세제로  
세탁한다.

⇒

③ 100°C 이상의 물속에 10분  
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.

※ <참고>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**오염세탁물**(환자의 피·고름·배설물·분비물 등에 오염)의 경우,  
**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**(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 제4조)

○ 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」 고시도 개정된다.

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‘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미용업’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.

그러나,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*<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>**

개정 전	개정 후	
(사)대한미용사회	(사)대한미용사회,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,	(사)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, (사)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

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이·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,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「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」 일부개정 고시안  
 2. 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」 일부개정 고시안

담당 부서	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	책임자	생활보건TF팀장	김정희 (044-202-2855)
		담당자	사무관	신은순 (044-202-2859)
		담당자	사무관	한나영 (044-202-285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## 1. 개정이유

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(덧옷)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, 이·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음.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(덧옷)은 폐기하거나,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호 제라목의 (3)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

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라목(1) 중 “도포류”를 “가운(덧옷)을”로 하고, 같은 (1) 및 (2) 중 “도포류는”을 각각 “가운(덧옷)은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3) 혈액이 묻은 타올, 가운(덧옷)은 폐기하거나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(유효염소농도 1000 ppm)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 (100℃ 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)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.

제1호라목(4) 중 “도포류와”를 “가운(덧옷)과”로 한다.

제2호나목(1) 중 “(1) 이물질”을 “이물질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2021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. 공통기준</p> <p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라. 기타 사항</p> <p>(1)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올이나 <u>도포류</u>를 제공하여야 하며, 한번 사용한 타올이나 <u>도포류</u>는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(2) 사용한 타올이나 <u>도포류</u>는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 멸균소독 · 증기소독 · 열탕 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,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(유효염소농도 1000 ppm)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하기를 권장한다.</p> <p>(3) <u>혈액이 묻은 타올, 도포류는 폐기한다.</u></p>	<p>1.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</p> <p>(1) ----- ----- <u>가운(덧옷)을</u> ----- ----- ----- <u>가운(덧옷)은</u> ---- ----- -----.</p> <p>(2) ----- <u>가운(덧옷)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3) <u>혈액이 묻은 타올, 가운(덧옷)은 폐기하거나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(유효염소농도 1000 ppm)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(100℃</u></p>

(4) 스팀타올은 사용전 80℃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, 사용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도포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한다.

2. 기구별 소독기준

가. (생략)

나. 영업종료 후

(1)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,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3. 재검토기한 :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)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.

(4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가운(덧옷)과 -----  
-----.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영업종료 후

이물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4년 7월 1일  
-----  
----- 6월 30일-----  
-----  
-----.

## 1. 개정 이유

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 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 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도록 지정되어 있음. 이에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4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고시안

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(1)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세탁업·미용업(일반)·미용업(피부)·미용업(손톱·발톱)·미용업(화장·분장)·미용업(종합)·위생관리용역업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”으로 하고, 같은 호 (2) 중 “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세탁업·미용업(일반)·미용업(피부)·미용업(손톱·발톱)·미용업(화장·분장)·미용업(종합)·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”를 “제3조의2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(3) 중 “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호 중 “위생교육기관”을 “위생교육 실시 단체”로 하고,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.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 단체



교육 대상자	위생교육 실시 단체
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자	(사)대한숙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	(사)한국목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업 영업자	(사)한국이용사회중앙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 영업자</li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</li> </ul>	(사)대한미용사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자</li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</li> </ul>	(사)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자</li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</li> </ul>	(사)대한네일미용사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화장·분장 미용업 영업자</li> <li>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</li> </ul>	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
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영업자	(사)한국세탁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	(사)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

3. 재검토기한: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. 공중위생교육대상자</p> <p>(1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세탁업·미용업(일반)·미용업(피부)·미용업(손톱·발톱)·미용업(화장·분장)·미용업(종합)·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</p> <p>(2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세탁업·미용업(일반)·미용업(피부)·미용업(손톱·발톱)·미용업(화장·분장)·미용업(종합)·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</p>	<p>1. -----</p> <p>(1) -----            ---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(2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</p>

(3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(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)

2.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

교육대상	교육기관
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자	(사)대한숙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목욕업 영업자	(사)한국목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업 영업자	(사)한국이용사회
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가목 또는 마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(일반), 미용업(종합) 영업자	(사)대한미용사회
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나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(피부) 영업자	(사)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다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(손톱·발톱) 영업자	(사)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라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(화장·분장) 영업자	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

(3) ----- 제17조 제3항에 따라 -----

2.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 단체

교육대상자	위생교육 실시 단체
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자	(사)대한숙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	(사)한국목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업 영업자	(사)한국이용사회중앙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대한미용사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대한네일미용사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화장·분장 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

교육 대상	교육 기관
법 제2조 제1항 제6호 <u>규정에 의한 세탁업 영업자</u>	(사)한국세탁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7호 <u>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자</u>	(사)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

<신 설>

교육 대상자	위생교육 실시 단체
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<u>따른 세탁업 영업자</u>	(사)한국세탁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<u>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</u>	(사)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

3. 재검토기한: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